세무고문계약서

"인지첨부"

위임자: (주)원익아이피에스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수 임 자 : 세무법인 올림 (兀林)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세무사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위임업무의 범위)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갑"의 위 표시사업장의 세 무관련 고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제 2 조 (보 수) 1. 본 계약에 따른 세무고문의 보수는 세무사 보수 규정에 의해 월정액 <u>금 500,000 원정(부가세별도)</u>으로 하고, "갑"은 계약과 동시에 1개월분의 월정액을 "을"에게 선불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때는 선불금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없다.

2. "을"이 제1조에 정한 업무에 수반하는 자료의 수집 기타 특별한 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세무사 보수규정에 의한 일당·여비·숙박료 등을 별도로 지불하여야한다.

3. 보수액은 제3조에 관계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u>2015 년 4 월 1 일부터 2016 년 3 월 31 일</u>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일의 <u>1 개월</u> 전까지 쌍방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된다.

제 4 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세무고문의 지급은 <u>매월 말 일까지</u> "을"의 지정된 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한다.

예금계좌 : __140-008-707950

은 행 명 :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

예금주명 : 세무법인 올림

제 5 조 (자료들의 제공 및 책임) 1. "갑"은 위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서류, 기록, 설명, 기타자료(이하 자료 등이라 함)등을 진실하게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자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야하며 제출된 자료가 을의 정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을 때에는 그것에 기인하는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 3. "갑"의 자료제공 부족, 오류나 사실과 다른 자료 등에 기인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책임은 "갑", "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비밀의 보장)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신의성실) "을"은 신의로서 성실하게 위임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기 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특기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갑"은 이를 승낙했기 때문에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위임자 (갑) 소 재 지 : 경기 평택 진위면 청호리 332-1

법 인 명 : (주)원익아이피에스 대 표 자 : 변 정 우 (인)

수임자 (을)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3 4층

법 인 명 : 세무법인 올림

대표세무사: 송 영 만

